




# 내부신고자보호/신고처리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KTC-C-24	1/4
제정일자	2022.12..	
관리부서	행정지원처	

## 규정류(제정 및 개·폐) 입안서

작성	부서	행정지원처		확 인	작성부서장	주관부서장
	입안일자	2022. 12.				
	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지				
	규정명	내부신고자보호/신고처리에 관한 규정		규정번호	KTC-C-24	
	제정 및 개·폐 사유	○ 교직원이 불법행위,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신고자 보호/신고처리				
검토	주요골자	○ 교직원 내부 신고 방법 ○ 교직원 내부 신고에 관한 처리 ○ 신고자 보호 ○ 신고자 포상에 대한 사항				
	검토내용 :					
승인	검토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채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각				
	승인의견 :					
인	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채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각				
	승인일자		승인자	(인)		



	<b>내부신고자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</b>	규정번호	KTC-C-24	<b>3/4</b>
		제정일자	2023.02.06	
		관리부서	행정지원처	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강원관광대학교 교직원이 불법행위,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신고자 보호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행위, 부패행위란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,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, 태만으로 본 학교의 행·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신고 방법)**

- 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신고자는 인적사항, 신고대상 및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부패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등이 현재 진행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신고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**제4조(신고 처리)**

- ① 감사관은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감사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
1.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
2.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
3. 동일한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
4.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



## 내부신고자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 KTC-C-24

제정일자 2023.02.06

관리부서 행정지원처

4/4

5.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다른법률 또는 규정, 제도등에 의해 관련 절차(재판, 수사등 포함)가 진행중인 경우
7.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

### 제5조(신고자 보호)

-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(이하 “불이익 등”이라 한다)을 받지 아니 한다.
- ② 신고자는 내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, 보직변경,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(이하 "신분 보장조치 등"이라 한다)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자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인사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,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감사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 제6조(포상)

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 행 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

『국내 유일한 세계적인 명문 관광 특성화 대학』  
『산학협력·취업·창업에 강한 특성화 대학』  
**강원관광대학교**



수신: 교학처장  
(경유)

제목: 내부신고자보호/신고처리에 관한 규정(안) 입안

1. 내부신고자보호/신고처리에 관한 규정(안)을 입안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내부신고자보호/신고처리에 관한 규정(안) 1부 끝.

담당자 김연희

행정지원처장 이태숙

총 장 원재희

협조자

시행 총무과 - 110 (2022.11.30 )

접수 ( )

우235-7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39번지 (지성관1층

) // <http://www.kt.ac.kr>

전화(033)550-6135 전송(033-553-7622) / 공 개